

2002. 12. 20.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1. 예산안 편성방향

-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편성
-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 투자예산 추가확보와 집행잔액 조정

2. 예산안 편성기준

가. 세입예산

-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계상
- 폐지학교 매각, 도로편입 보상등 재산매각과 위약금 증액계상

나. 세출예산

-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자녀 학자금 지원 및 피해복구비 추가계상
- 각급학교 ICT 모델학급 인프라구축 사업비 추가계상
- 2004년도 시설되는 초등학교 다목적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
- 집행잔액 감액조정 및 예비비 편성
- 연도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의 명시이월

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제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비 고
1,058,221,932	1,033,763,512	24,458,420	기정예산대비 2.4%증

나.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58,221,932	100	1,033,763,512	100	24,458,420	2.4
국가부담수입	839,141,731	79.3	816,605,014	79.0	22,536,717	2.8
-지방재정교부금	717,056,662	67.8	693,750,388	67.1	23,306,274	3.4
-지방교육양여금	115,221,438	10.9	116,657,321	11.3	△1,435,883	△0.2
-국고지원금	6,863,631	0.6	6,197,305	0.6	666,326	10.8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91,487,809	8.6	91,487,809	8.8	0	0
-법정전입금	90,162,866	8.5	90,162,866	8.7	0	0
-비법정전입금	1,324,943	0.1	1,324,943	0.1	0	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25,968,998	11.9	124,047,295	12.0	1,921,703	1.5
-재산수입	4,444,180	0.4	2,867,072	0.3	1,577,108	55.0
-입학금및수업료	36,170,129	3.4	36,170,129	3.5	0	0
-사용료및수수료	248,623	0.0	217,749	0.0	30,874	14.2
-잡수입	9,366,897	0.9	9,053,176	0.9	313,721	3.5
-이월금	75,739,169	7.2	75,739,169	7.3	0	0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1,623,394	0.2	1,623,394	0.2	0	0
-주민부담수입	262,000	0.0	262,000	0.0	0	0
-기타지원금	1,361,393	0.2	1,361,393	0.2	0	0

다.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제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058,221,932	1,033,763,512	24,458,420	2.4
유 치 원	5,473,427	5,472,718	709	0.0
초 등 학 교	153,368,047	146,441,526	6,926,521	4.7
중 학 교	127,890,617	128,137,432	△246,815	△0.2
고 등 학 교	109,536,672	106,347,790	3,188,882	3.0
특 수 학 교	12,273,075	12,121,150	151,925	1.3
기 타 학 교	79,292	78,347	945	1.2
평 생 교 육	1,982,144	1,982,144	0	0
급 여 관 리	520,345,194	520,345,194	0	0
복지·후생	56,716,447	58,350,359	△1,633,912	△2.8
교육위원회	366,621	366,621	-	-
선 거 관 리	155,696	155,696	0	0
교 육 청	12,357,326	11,647,857	709,469	6.1
지역교육청	5,250,645	5,082,590	168,055	3.3
교육지원기관	4,855,703	4,675,142	180,561	3.9
지방채상환	18,177,217	15,426,000	2,751,217	17.8
제 지 출 금	0	0	0	0
예 비 비	29,393,809	17,132,946	12,260,863	71.6

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기정예산 1조 337억 6,351만 2천원보다 2.4%인 244억 5,842만원 증가한 1조 582억 2,193만 2천원임.

가. 세입예산

- 재원별로는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8,166억 501만 4천원보다 2.8%인 225억 3,671만 7천원 증가한 8,391억 4,173만 1천원이며
- 지방비부담은 기정예산 2,171억 5,849만 8천원보다 0.9%인 19억 2,170만 3천원 증가한 2,190억 8,020만 1천원임.
- 자체세입예산은
 -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914억 8,780만 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1.5%인 19억 2,170만 3천원 증가한 1,259억 6,899만 8천원으로이는 잡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5.0%인 15억 7,710만 8천원이 증가한데 기인함.

나. 세출예산

- 인건비는 4,067억 9,251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5억 6,257만 9천원 증가한 1,260억 2,930만 8천원
-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보다 0.1%인 3억 3,353만 4천원 증가한 2,755억 5,107만 7천원

○ 자본지출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3%인 85억 5,022만 7천원 증가한 2,069억 7,231만 2천원

○ 지방자치단체내부거래는 1억 5,569만 6천원으로 변동없으며

○ 보전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6.0%인 27억 5,121만 7천원 증가한 133억 2,721만 7천원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71.6%인 122억 6,086만 3천원 증가한 293억 9,380만 9천원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058,221,932	1,033,763,512	24,458,420	2.4
인 건 비	406,792,513	406,792,513	0	0
물 건 비	126,029,308	125,466,729	562,579	0.4
경상이전비	275,551,077	275,217,543	333,534	0.1
자 본 지 출	206,972,312	198,422,085	8,550,227	4.3
보 전 지 출	13,327,217	10,576,000	2,751,217	26.0
예비비및기타	29,393,809	17,132,946	12,260,863	71.6
지방자치단체 내 부 거 래	155,696	155,696	0	0

5. 검토의견

-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37억 6,351만 2천원보다 2.4%인 244억 5,842만원이 증가한 1조 582억 2,193만 2천원의 규모로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과 재산수입, 위약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태풍 피해 자녀 학자금 지원과 피해복구비,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등 투자예산과 집행잔액 조정 등 추가소요 예산을 계상요구한 바

세입, 세출 예산안중 중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자체 세입예산의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므로 시정이 요구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1) 특별교부금 사업중 현안사업 (47억)
- 2) 토지 및 기타 재산매각 수입 증액(14억) 사유 및 내용
- 3)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감액 조정(14억)사유
- 4) 기타 사용료,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잡수입의 산출기초
- 5) 불용품 매각대로 5개시군교육청만 계상한 사유
- 6) 변상금 및 위약금의 주요계상 내역
- 7) 잡수입 1억 8천만원의 증액내역과 사유
- 8)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등 각종 검정시험 수입과 소요비용의 차이와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지 균등화 계획

나. 세출예산

1) 산출기초 미기재(반복지적사항)

소요예산계상은 단가 및 사업량등을 기재하여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요사업비×설계비 또는 부대비 적용률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계상요구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 인지 판별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항별 설명서 87, 88, 99, 101, 139, 145, 157, 158, 163쪽의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용률이 몇 %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예산과대계상 집행

- 사학지원인건비 15억원
- 특수교육 진흥비 3억원
- 대여장학금 16억원을 각각 감액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3)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성립전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내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최대한 절제하거나 예산을 적기에 내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한바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집행사업 예산으로서

- 성립전 예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선심성이거나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모성 경비예산으로서 과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시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성립전예산집행사업현황(재해관련제외)

사 업 명	부 서	비 고
○ 지역인적자원개발운영	초등교육과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포함(2억원)
○ 점자정보단발기구입	"	○ 445,500천원(사학지원)
○ 청각장애학생보완도구	"	○ 37,396천원(사학지원)
○ 디지털문자자막수신기	초등교육과 지역교육청	○ 청주, 충주, 제천, 옥천
○ 독서교육토론회	중등교육과	○ 3,100천원
○ 학교도서관활성화연찬	중등교육과 지역교육청	○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급량비, 강사교통비 등 ○ 11개 시군교육청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등교육과	○ 306,919천원
○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개최	과학실업교육과	○ 1,000천원
○ 실고기자재확충및대체	"	○ 1,233,968천원
○ ICT모델인프라구축(공립,사립)	교육정보화과 지역교육청	○ 11개 시군 교육청
○ 교육정보화사업공로자국외연수	교육정보화과	○ 5,400천원
○ 전국단위해정정보시스템구축	"	○ 7,950천원
○ 휠체어 및 각도조절식의자	기획관리과	○ 10,000천원
○ 도서관및다목적교실신축설계비	시설과	○ 67,500천원
○ 교수학습지원센터구축	교육과학연구원	○ 161,920천원(일반운영비, 급량비, 수당, 여비, 자산취득비)
○ 교직원사택신축또는보수	충주,보은, 영동,단양	
○ 도서관 신축 설계비	청주, 음성	○ 23,064천원
○ 도서실확충 설계비	"	○ 8,148천원
○ 스위치허브외 6종	"	○ 10,000천원
○ 학교도서관도우미연수		○ 1,000천원
○ 사립유치원교재교구구입	보은군교육청	
○ 무선마이크외 3종	"	○ 10,000천원
○ 다목적교실설계비	진천군교육청	○ 10,245천원
○ 발명공작실설치	음성군교육청	○ 50,000천원

4) 명시이월예산

○사업명(시설명)표기의 문제

학교신설, 학교증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와(183~184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주요사업설명자료의 표기가 각각 다르고 일부사업예산의 경우 금액이 달라 비교분석이 곤란하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다음 예시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시)

예산사항별설명서 (87~88쪽)	명시이월조서(183쪽)	설명요구사항
310-04 사학시설지원비 1. 도서관신축 870,000,000원×1교	○ 충주여고도서관 - 예산액 : 870,000천원 - 지출원인행위액 34,000천원	○ 충주여고는 사립? ○ 예산승인전 지출 원인행위여부
401-02 1. 도서관신축 836,000,000원×1교 2. 다목적교실신축 830,500,000원×1교	? ○ 옥천상고 다목적교실 - 예산액 : 864,000천원 - 지출원인행위액 33,500천원	○ 연도내 집행가능 여부 및 시설입지 ○ 총사업비 ○ 예산승인전 지출 원인행위여부
401-01 설계비 3,000 나. 복싱장개축(88쪽) 87,000,000원×1교 2. 학교외부환경개선(88쪽) 가. 부지정지 159,000,000원×1식	○ 복싱장 개축설계비 3,000천원 ○ 복싱장개축 87,000천원 ○ 부지정지 159,000천원	○ 시설위치 ○ 부지정지 목적

-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의 명시이월 승인신청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군 교육청의 교직원 공동주택건축사업비(5억 447만 6천원)는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표기되어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184쪽에도 기재되어 있어 모순인바 설명이 요구됨.
- 개교예정기간 경과 학교의 사업비 명시이월
 명시이월조서에 의하면 지암초등학교의 예산중 5억 5,689만원을 명시이월요구 하였으나 이월사유란에는 2003. 9월개교예정 으로 되어 있는바 설명이 필요함.
- 2004신설교 다목적실 사업예산의 이월
 금회 추경에 요구한 2004년 신설학교 6개교(사천초, 울봉초, 금등초, 내토초, 신봉초, 성화초)의 다목적실 설치예산 32억 6,16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정의 학교신설예산과 합산 이월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 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사학지원 예산의 명시이월
 금회 추경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화장실 확충 등 5억 4천 9백만원을 계상요구하고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구 한 바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1회 또는 2회 추경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명령기간을 감안 2003년 당초예산에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부적절한 명시이월 사유
 명시이월예산 승인신청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해로 이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예산조서상에 나타난 이월 사유는 년도말인 3회추경에 예산승인을 받더라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예견되고, 또한 학교신설과 같이 다액투자사업의 경우 설계용역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자치단체의 시설결정, 토지 소유주와의 부지매입협의 등 선행절차 이행기간을 감안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부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운용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년차별 투자계획과 연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사장, 사업예산의 이월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지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 학교안전 공제회기금 보조 1억 1천만원 증액사유
- 도서관 내부 비품비 4,500만원의 내역(청주시교육청)
- 낙석방지망사업 및 경사면 복구사업(충주시교육청)
- ICT모델 인프라 구축사업
- 교사 숙직실.사택보수사업(영동)
- 교직원 사택보수 27동 및 강당석축 보수사업(단양)